# 第307回國會 (臨時會)

#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國會事務處

### 2012年5月2日(水)午後 2時

### 議事日程

- 1. 제307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유재풍) 추천안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 13.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22.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
- 6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 6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

### **附議**된案件

1.	제307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유재풍) 추천안(의장 제의)5
66.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우제창·
	강성종·김정·신건·양승조·이경재·이사철·이성남·정장선·조영택 의원 발의) ······· 16
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정해걸·조진래·
	권영진·박우순·임해규·이한성·박준선·김성수·여상규·이영애 의원 발의) ·············17
9.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유재중·권영진·권경석·박민식·
	윤석용·최구식·이종혁·정해걸·원희목·조진래 의원 발의)17

1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 의원 대표발의)(강봉균・안규백・김효석・주승용・최인기・김성순・김우남・이종걸・조영택・전병헌・최규식・문학진 의원 발의)
1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범구 의원 대표발의)(정범구·이낙
	연·박은수·강기갑·이인기·박영선·조배숙·김유정·김재윤·김영록·김효석 의원 발의) 17
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박준선·김성수·정해걸·
	정양석·권영진·윤석용·윤영·이한성·조진래 의원 발의) ···································
13.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 김재균 · 김춘진 · 박우순 · 신건 ·
	안규백·유선호·유원일·전현희·정범구·조경태·주승용 의원 발의)
1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ㆍ정해걸ㆍ성윤환ㆍ김학용ㆍ최연희ㆍ
1 1.	강석호 · 이낙연 · 유선호 · 김춘진 · 류근찬 · 김낙성 · 송훈석 · 신성범 · 이윤석 · 김성수 · 김효석 ·
	여상규·김재윤·김우남·김영록·조진래·변웅전·황영철 의원 발의)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17
1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17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17
1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10.	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19.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17
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7
21.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식물신품종 보호법안(정부 제출)17
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조배숙·유선호·김부겸·김성곤·정장선·
	장병완·조영택·김우남·전현희·백재현·김재윤 의원 발의) ···································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ㆍ유선
	호·김부겸·김성곤·정장선·장병완·조영택·김우남·전현희·백재현·김재윤 의원 발의)21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6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동 의원 대표발의)(김성동·김혜성·허원제·원희목·한선교·
	오제세·이애주·강명순·손숙미·이철우 의원 발의) ·······21
6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21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상은·정해걸·
	李玲愛・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23
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상은・정해걸・李玲愛・
	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23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
	정태근·이진복·김태환·김성조·김태원·김선동·이화수·배은희·서상기 의원 발의) ········23
2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박은수·박우순·김학재·박지원·
	주승용 • 조경태 • 최종원 • 김진표 • 정동영 • 강창일 • 김재윤 • 김우남 • 서종표 • 장세환 • 오제세 •
	신건·강봉균·박상천·노영민 의원 발의) ······23
2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윤진식·유성엽·김효재·현
	경병·박종근·이애주·강창일·김정권·이종혁·신상진·이한성·한선교 의원 발의) ······ 23
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23
2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3
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
	용ㆍ권영진ㆍ유재중ㆍ유정복ㆍ추미애ㆍ원희목ㆍ이춘식ㆍ이낙연ㆍ김정권ㆍ최경희 의원 발의) … 25
3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이윤성·이한성·권영진·

	양승조・손숙미・박은수・전현희・원희목・유재중 의원 발의) 25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25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25
34.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5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25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 신영수 · 이미경 · 강성천 · 이
	사철・김금래・홍영표・조원진・정진섭・김영우 의원 발의)27
3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27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27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7
4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양승조・
	주승용 · 김성순 · 김우남 · 조영택 · 정동영 · 유성엽 · 우윤근 · 이시종 · 이낙연 · 정장선 · 김춘진 ·
	허태열·강기정·김성곤 의원 발의)
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소남·김정권·
	이한성·정영희·김성수·변재일·권경석·박희태·김정훈·원희목·이인기 의원 발의) 20
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여상규·정해걸·
	백성운ㆍ김재경ㆍ권영진ㆍ신성범ㆍ조진래ㆍ장광근ㆍ신영수ㆍ정갑윤 의원 발의)20
4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22
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20
4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22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20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20
5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22
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20
5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32
5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32
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32
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32
5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32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32
5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32
5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2
6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2
6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장 제출) ····· 34
6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윤영・김금래・손숙미・강승규・이경재・최인
	기・한선교・이낙연・안형환・박준선・김성동・진성호 의원 발의)35
6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제출)35

(16시56분 개의)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국회(임시회) 제1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회의원으 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만 총선을 치른 후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여의 치 않아서 오늘에서야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을 국 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 다.

오늘 본회의로써 사실상 제18대 국회가 끝나게 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 셔서 우리 국민들에게서 부여받은 소임을 마지막 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제307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59분)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유재풍) 추천안(의장 제의)

(17시00분)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국민권 익위원회 위원(유재풍)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이재화 위원의 사 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됨에 따라 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으로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유재풍의 재 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 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 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여상규 의원, 조경태 의원, 조정식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 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1인을 추천 하는 단기식 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 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 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 표함 우측에 출력되는 투표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 습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시되는 순서에 따라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7시02분 투표개시)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그러면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7시16분 투표종료)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 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유재풍)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3표 중 가 180표, 부 10표, 기권 3 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유재풍)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6.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국방 위원장 제출)

(17시17분)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을 먼저 상정 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송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송영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3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제평화질서 구축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과 주변 국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 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 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 과 추가 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 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이 금번 발사한 로켓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며,

셋째, 북한이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 호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신속 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고,

넷째,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 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량살상무기 및 동 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 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 한 주민의 민생을 돌보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남 북한 상호협력 증진과 평화질서 구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섯째, 정부도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 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우리 국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송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으로서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시22분)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노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 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노영민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노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건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도록 하여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 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 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 고,

둘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 안 중 예산안 등을 제외한 의안은 일정한 숙려기 간 이후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처음으로 개회되 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 다.

셋째, 위원회는 예산안 등과 법제사법위원회의체계·자구 심사를 제외한 안건의 쟁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여야 동수로 6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넷째,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 5 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처리대상안건 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일로부터 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 이내 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각각 다음 단계로 자 동 회부 또는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 다.

다섯째,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되 토론 실시 중에는 '일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산 회 없이 계속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토 론의 종결은, 첫째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 나, 둘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 경우, 셋째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 하며, 토론이 종결되면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위원회는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 수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 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예산안 등은 그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며,

일곱째, 의원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어느 누구도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수 없 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질서문란행위 관련 징계의 경우 경고 또는 사과는 2개월 수당 등의 2분의 1을, 출석정 지는 3개월 수당 등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징계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2012년 5월 30일로 하되 예 산안 등을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여야 간에 정부의 의견을 들어 국가재정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 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2013년 5월 30일까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중 예산안 등 본회 의 자동부의 관련 규정 시행일을 개정하여 연장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 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노영민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황우여ㆍ김진표 의원 외 스물여덟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 다.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議員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입니 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절차와 신속처리대 상안건의 처리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안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 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 의에 부의되는 때에는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고,

둘째,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않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 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된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 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 을 경우 개정안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 건이 과중하므로 60일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 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120 일 이내에 종료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 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도 록 하고,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는 경 우 부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 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 시기 바랍니다.

○金映宣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단 한 표가 많아도 당선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고 국회에서 과반수에서 한 명이 더 많으면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이성적 합의를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 여론의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 원칙이고 일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소위 몸싸움 방지법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에 찬성을 하시면 이 원칙을 파괴하시는 겁니다. 쟁점 법안이라고…… 쟁점 법안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몇몇 사람만 반대하면 쟁점 법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쟁점 법안이 되면 상임위에서 66%, 법사위에서 60%, 본회의에서 60%의 동의를 받아야 상정이 되는데 표결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2분의 1 출석에, 2분의 1 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상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된다면 국회라는 것은, 상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 또는 필리버스터의 경우에 100명이 단합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2인 66%, 본회의에서는 180명에 이르기까지 그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회라

는 것은 단 한 명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뜻을, 그 사람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 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저항하는 세력들, 강경파 들에 의해서 국회가 작동 중지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2분의 1 출석에 2분의 1 과반수인 상태에도 지금 46%, 6만 4000여 건의 법안이 다 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합의를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리고 또 쟁점 법안에 관해서 엄격하게 해서 일부 를 엄중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 으나 이 구조는 국회의 기본 의사 구조를 바꿉니 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의사권을 스스로 박탈을 합니다. 상충하는 경우 에 특정한 경우에는 간사 간 합의, 당 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그 프로세스가 풀어지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러면 과반수를 얻으려는 국회의원 개 개인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당 지도부를 한다 고 해도 보통 1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당 지 도부가 당력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요행히 상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각 위원회에서 또는 이 본회의에서 3 분의 1 정도만 반대를 하면 그 법안 자체를 다루 어 볼 수조차 없는 원천 불능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 당권에 연결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 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안이 상정이 되어 갖고 그러면 당연히 처리가 되느냐? 상정된 다음에 몸싸움을 하면 어떻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처벌규정이 없어서 몸싸움을 못 막고 있습니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30명만 단합하면, 아니면 한 위원회에서 일고여덟만 단합하면 그 위원회를 작동 중지를 시킬 때그 강경파들, 몸싸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 법안은 몸싸움 방지법이 아니라 몸싸움을 하는 7명 내지는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단결 만 하게 되면 선량하게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는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을 원천 부정하는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싸움 방지법은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을 구더기라고 치면, 구더 기가 있으니까 아예 장독을 세 등분 해 갖고 물 이 들어가지 못하게, 장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다는 이런 법은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능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 으로 국회가 웬만한 법은 상정조차 못하고 프로 세스 진행에 있어서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이것 은 국회가 작동 중지가 되면 결국에는 행정부나 다른 사회기관도 작동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대행님!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 히 말씀드렸으므로 저는 몇 가지 문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께서 지적한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 5분의 3 의결을 얻 지 아니하면 종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식물국 회가 된다'하는 요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필리버스터 종결은 5분의 3 의 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기 종료에 의한 필리버 스터 종결이 있습니다.

가령 5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로 어떤 법안을 저지했을 때 6월 달 임시국회를 소 집하면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더불어 필리버 스터는 종결되고 6월 임시국회 첫날에 지체 없이 법안을 과반수 표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하는 식물국회가 된다 는 이 이론은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에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필리 버스터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단독 과반수로 통과 시키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합의안을 토출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불과하고 그 루트에 의하지 않고 아 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 종료에 의한 필리버스터 종결을 기도할 경우에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그 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현행법에 직권상정제도가 있고 과반 수 의결로 법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굳 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지적 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 을 발휘하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 하게도 우리 18대 국회에서 본 바와 같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쟁점법안 처리는 대단히 어렵습니 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조정위원회 구 성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 이러한 제 도를 두어서 타협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 입니다.

18대 국회에서 보듯이 쟁점법안을 현행법에 의 해서 처리할 때 대다수의 경우가 의장의 직권상 정, 몸싸움, 다수당에 의한 강행처리로 귀결됐습 니다. 쟁점법안과 예산안이 그렇게 처리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 몸싸움에 의해서 국회와 국회의원 의 위상이 추락이 됐고 그 처리는 다수당 단독처 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 한 정치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국민은 국민 다수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 내 지는 국민 대다수를 포함한다고 하는 해석은 당 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행처리, 단독처리가 됐을 때의 그 법 은 국민 대다수에 의한 법이 아니고 다수파 단독 의 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안에 대한, 법에 대한 승복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회의원의 위신을 고양 시키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는 법이 국민 대다 수가 승복하는 법을 만들려면 타협을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법입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 국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는 법이 나 예산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위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박상천 의원 그래서 새누리당 총선 공약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을 제시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국회법, 선진화법을 운영하는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분의 3이니 안건조정위원회니 하는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지, 국회의 의사를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국회의 자세가 대결과 몸싸움보다는 타협에 의한 운영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타협에 의한 운영이될 때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은 국민 전체가, 대다수가 승복하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을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박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첨예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선진화다' 또는 '몸싸움 방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 도적으로 보장해 줘서 우리가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내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에 안건조정위를 3 대 3 동수로 만드는데 이걸 통과하려면 3분의 2, 4명이 찬성 을 해야 됩니다.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데 불가 능합니다.

자, 안건조정위는 부가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안 되면 다시 일반 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처 리가 안 됐는데 일반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겠 습니까?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통과해 가지고 겨우 법사위로 보냈다 고 칩시다.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하고 깔고 뭉개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통과시켜라'라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를 하려면 5분의 3이 통과되어야 됩니

다. 5분의 3이면 300명에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로 회부를 해라라고 넘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면 양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쟁점으로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합의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 안 되면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 않 겠느냐, 직권상정은 전시, 천재지변, 양당 합의, 딱 세 가지입니다. 이런 쟁점 법안 사항에 대해 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직권상정도 불가능해집니 다.

다섯 번째, 신속처리제라는 속임수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면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됩니다. 그런데 5분의 3은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속처리제, 말만 신속처리가되어 있고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으로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찬반토론 5분으로 잡아서 만일 100명이 등장해서 작심하고 한다고 합시다. 500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9시간 이상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후 늦게랄지 야간에 시작해 가지고 9시 간을 끈다, 차수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 할 때도 숫자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지 금은 양당이 합의해서 숫자가 50명이 안 돼도, 아, 5분의 1이니까 60명이 안 되더라도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60명이 안 된다, 즉각 상대 당에서 의사정족수 미달이라 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가 스톱되게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회의가 유회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 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철학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을 5분의 3이라는 절대 다수의 원칙으로서 기본 철학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도, 철학에서도 맞지 않는 좋지 않은 매우잘못된 법입니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 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 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해서 부결시 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 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 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 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부결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 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심재철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 배ㆍ동료 의원님!

제가 국회의원 생활 12년을 하면서 거의 매년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몸싸움 입니다.

이번 선거 때도 시장에 나가 보면 여러분도 경 험했겠습니다마는 시장 아주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제발 몸싸움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 다.

사실 대부분의 법안은 아시다시피 합의로 이루 어지는데, 1년에 한두 번 이 몸싸움이 언론에 크 게 부각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몸싸움 자체가 반드시 저는 악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권 혹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심대히 파괴되는 것이라면 몸싸움, 아니 목숨을 바쳐서 라도 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2년 동안 국회에서 지내보 면서 이른 결론은, 지역과 당을 막론하고 대부분 의 모든 의원님들이 다 양심과 상식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나라와 국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 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당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권력 화하면서 정권 쟁취를 위해서 싸우게 되고 그 과 정에서 상대 당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싸 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발 19대 국회에서는 각당이 당론이라는 것을 최소화하고 헌법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의 양 심과 상식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자율에 맡기 면, 우리 국회가 훨씬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법(法)이라는 한자도 물 수(水) 자, 갈 거(去) 아닙니까?

이번 선진화법의 요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을 제한하는 대신 다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 수당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즉 소수당에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제도로써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게 하고 다 수당에게는 안건의 자동 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 리고 예산안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국회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방금 김영선 의원님과 심재철 의원님 발언에 좀 사실과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소수가 발 목 잡는다고 그랬는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나 필리버스터나 재적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 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당론으 로 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런데 이 각당이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이렇게 3 분의 1로 해서 쉽게 안건조정위나 필리버스터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몇 사람이 이렇게 동의하면 국회가 식물국회로 마비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이 걱정하셨습니다마는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소 위원회로 넘어가고 바로 다음 상임위에서 이건 다수결로 표결하게 되고, 필리버스터도 그 회기 만 끝나면 자동 종료돼서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만 조금 더 지체 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신속처리제도와 법사위원회에서 지체되는 경우 법안의 처리 5분의 3 요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에 신속처리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법안의 통과를 보장하고 있는데, 문 제는 의결정족수가 과반수가 아니고 재적 5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식물 국회로 가는 길이 아니냐 하는 걱정입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안은 국회

법, 49조에 따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표결, 혹은 여야 간에 타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신속처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극히 제한된 몇 개 안 되는 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일 때 국보법 개정안, 사학법 개정안 또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방송법, 4대강 예산 등등입니다. 이런 사안은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 간에 찬성 과 반대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에 한 해서 의결정족수를 5분의 3으로 하자는 것입니 다. 그것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의원 들이 당론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크로스보팅 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회법에도 중요한 안건의 경우는 과반수가 아니고 재적 혹은 출석 3분의 2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법의 개정은 3분의 2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법안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찬성을 우리 헌법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안의 중요성에 따라 이 과반수 와 3분의 2 사이에 5분의 3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구나 19대 국회는 보수와 진보 숫자가 지금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당이 단순 과반수로 밀어붙인다면 야당은 더욱 크게 반발할 것이고 우리 국회는 식물국회 정도가아니고 난장판 동물국회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신속처리제도의 5분의 3 요구는 우리 국회를 식물국회도, 동물국회도 아닌 타협과 양보로써 정말 사람다운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믿고 한번 해 봅시다. 정 안 되면 나중에 또 고치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의원**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성숙한 선진 국회로 가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염원을 담

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또 한 가지 중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입법부인 우리가 법안 내용조차 모른 채 표결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그러한 방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본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까지도 당일 무슨 법안이 처리되는지 공 지조차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결국에 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른 채,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조 정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충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찬성했다가 국회 가 통째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웃지 못할 해프닝 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번 헌정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 헌정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 신 분 중 퇴임 후에 연금을 더 타겠다고 그 법안 에 찬성한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내용도 못 보고서 대충 '좋은 내용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충 표결했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 을 받았습니까?

존경하는 국회 지도부, 그리고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의원이 상정법안을 미리 검토하고 자기의 의사를 실어서 표결에 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이자 권리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합의라는 명목 아래 본회의 당일 부랴부랴 상정법안을 마련하고 법안 제목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보고 참고해 달라'는 제안설명이 끝나자마자 표결에 들어가는 이 소가 웃을 관행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법률안과 예산안 상정 후 최소한 숙성기간을 두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2009년 6월에 최소한 24시간의 숙성을 시키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께서도 본회의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24시간전까지 심의 대상 안건을 국회의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0년 2월에 발의하신 바가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2009년 9월에는 김영선 의원님께서 또 2011년 1월에는 조승수 의원께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대표발의 하신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소위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더 이상 법안 내용도 모른 채 표결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 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 법안 상정이 공지된 후 국가안보와 경제위기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각자 의원님들께서 최소한의 법안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진정한 의미의 국회 선진화로 가기 위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선진 국회로 가기 위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몸싸움을 하건 안 하건, 왜 몸싸움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몸싸움을 해야 되는지 우선 알게 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 ○황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황영철 의 워입니다.

저는 오늘 갑작스런 찬성토론을 준비하게 되었 습니다. 잘 준비되지 못한 발언이라도 양해해 주 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몸싸움 등 낯부끄러운 모습으로 점철된 일그러진 국회의 자화상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국 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부터라도 다수당은 힘의 논리와 기득권을 내려놓 고 소수당은 억지 부리기와 발목 잡기를 근절하 여 대화와 타협의 성숙된 의회 문화가 조성되기 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으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근절되어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 난장판 국회' 라는 오명을 씻어 낼 수 있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에 새로 도입한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필리버스터 신설 등은 다 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 와 타협의 정신을 복원해 의회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한편 신속처리제와 예산안 및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 회부, 국회 질서유지 강화 등은 억지와 물 리력에 의한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 방해를 근 원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우리 국회 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 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후진적인 국회 폭력이 횡행하고 이 같은 치부가 외신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되어 국가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고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국 회를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불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1년여간의 기나긴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 지난 17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했 습니다. 이제 우리는 총의를 모아 국민의 뜻대로 할 일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의사결정 전반을 관통하는 절대 기준은 당연히 재적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 과반 찬성입 니다. 본 개정안도 우리 헌법 제49조의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국회 의결의 대원칙을 거스르 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해 온 일부 안건에 대해 몸싸움이 아니라 전 력과 논리 다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식물국회가 되거나 국회 마비 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건조정제도는 이 제도에 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난 뒤 타결되면 타결된 대로, 부 결되면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인 과반수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둘째, 필리버스터 또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 되 해당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 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과반수 기준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 고 직권상정의 신봉자가 되어 혹은 국회 폭력의 선봉자가 되어 국민의 공분과 혐오의 대상이 되 어야만 하겠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 려는 분들에게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다 는 것인지,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5%도 되지 않는 쟁점법안은 의석 수나 시간 다툼에 매달리기보다는 국민의 의사를 종합적으 로 물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루한 토론에 대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무리한 직권상정, 국회 폭력과 몸싸움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치러 온 막대한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정의롭고 올바른 결정만이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제46조의정신에 입각해 우리 18대 국회가 동 법률안을 꼭통과시켜서 입법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로운미래를 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18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수염도 싹 청소를 하고 말끔하게 나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국회 몸싸움 방지법 이 법 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17대에 80여일을 단식으로, 온 몸으로 농어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8대에는 부자감세, 4대강, 한미 FTA, 미디어법 등에 대해서 어쩌면 국회 몸싸움의 가장 중심에서 제가 국민적 질타도받았고 또 오명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8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농사 꾼으로 돌아가는 마당에서 정말 이 자리에서, 국 회에서 싸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 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가 왜 싸움이 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선거 때만 되면 서민과 국민을 위해서 너도 나도 다 이구동성으로 공약도 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선되고 나면 국회가 심대한 병에 걸립니다. 무슨 병입니까? 부자 병 재벌 병입니다.

17대에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쌀 협상 등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지만 18대처럼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싸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나라당이 3분의 2하고 맞먹는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서 날뛰었고 이국회는 입법부면서도 행정부의, 청와대가 시키는일 그대로 날름날름 주워먹는 꼭두각시 시녀 노릇이 됐고 행동대장에 나섰습니다.

사람도 병에 걸리면 고통이 와야 됩니다. 통증이 와야 됩니다. 죽을병에 걸려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암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병에 걸린줄도 모르고 치료도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국회가 서민을 외면하고 재벌·부자병에 걸려 갖고 시녀만 하면서싸움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자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소수 야당이나 거대 야당이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난리치는 과정에서 오로지 일방적으로 청와대의 밀어붙이는, 거기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대 여 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판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18대 국회의 뒤를 돌아보면서 그 MB정권과 정부 여당이 반성했습니까? 감세법안 다시 되돌리고 당명 바꾸고 하는 것은 일부 그런 표현이라고 봤지만 이런 데 대한 엄중한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는 국회가 서민들·소외자들 외면하지 않고 전체 국민과서민, 물론 그 안에는 재벌도 있습니다. 같이 끌어안는 국회로 가겠다는 이런 반성이 돼야 국회가 싸움이 안 나는 것이지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발목 잡고 이렇게 한다고해서 국회가 부자 병 재벌 병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도 비교 섭단체의 의견 무시, 소수 정당의 의견들이 제대 로 반영 안 되고 일방적으로 양 교섭단체 중심으 로 밀어붙이기 한 것이 대단히 폐해가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한 보완책 하나 없이 양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처리하면 소수 의견들은 이제 의사진행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반대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면 통증이 오고 고통이 와야 치료가 되 듯이 우리 국회가 두 번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벌과 부자들, 특권층만을 위하는 그런 밀어붙 이기 식 의사 진행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할 때는 고통도 싸움도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지요. 많은 국민들이 제발 싸움질하지 말라는, 저 도 선거 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그것마저 안 한다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 까?

이 법을 통해서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질 안 하는 국회로 만드는 그런 반성과 성찰 과 어떤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반대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잘했다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강기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내어주신 의원님들께 정 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들어오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정말 모두 나라를 위 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입성하지 못했다 했을 때 이 자리 에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이 자리를 메워 주신 의원님들의 그 애국심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의원님 들 모두 저는 모두 국가를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100% 옳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 나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지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은 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말 씀을 하세요. 첫 번째 싸움박질 좀 그만해라 지 긋지긋하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 특권 좀 줄여라. 세 번째 그 시간에 민생을 논하고 챙겨라……

그 첫 번째가 싸움박질 그만하라는 얘기였습니 다.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면 연말마다 예산 때문에 몸싸움하고 쇠사 슬 끊고 막판에는 최루탄까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 보면 대부분 많지 않았습니 다. 몇 가지 법안이었습니다. 예산, 미디어법, 한 미 FTA 이 정도 법안이 국회 전체를 사실은 식 물국회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 면 식물국회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식물국회이고 식물국회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몇 가지 쟁점 법안 때문에 나머 지 민생법안이 다 발목이 잡힙니다. 기억해 보십 시오. 직권상정해서 강행처리하고 몸싸움하면 장 외투쟁하고 냉각기를 거칩니다. 몇 달을 국회는 문을 열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식물국회보다도 못한 사실은 냉각, 빙하기 국회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얼어붙은 국회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 그렇다면 이 법 을 200년 넘도록 해 오고 있는 미국 의회가 식물 의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그동안 상정 놓고 충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상정은 시간 지 나면 자동이 됩니다. 상정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마 몸싸움, 고함지르고 하는 것의 절반 이상을 상정 때문에 싸웠는데 그것 없어집 니다.

예산 때문에 매년 푸닥거리했지 않습니까? 예 산 12월 2일 되면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력 처벌 한다 한다 해 놓고 한 번도 해 본 적 이 없습니다. 이제는 폭력 처벌을 의무화하는 규 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

이 법이 100%를 다 해결한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진전입니 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몇십 명이 담합해서 국 회를 무조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한두 명 국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뽑아 주신 선량들의 그 양심과 상 식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국회를 만 들 수 있도록 우리 18대 국회가 마지막 우리 대 한민국 국민들께 선물을 주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 주시고 꼭 가능하면 찬성 투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남경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 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요, 잠깐만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27인, 반대 48인, 기권 17 인으로서 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수정 안대로, 기타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 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로 제헌국회부터 이어져 오 던 우리 국회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뀌게 되었습니 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기쁨보다는 우려가 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 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과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우리 여야 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국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진국회는 결코 제도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 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정치풍토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표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의 원님들께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진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 탁드리는 바입니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우제창・ 강성종・김정・신건・양승조・이경재・이사철・ 이성남・정장선・조영택 의원 발의)

(18시17분)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 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委員長代理 李珍福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이진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무공훈장 등급별로 무공명예수당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복 수훈자에 대한 무공명예수당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 시행시기를 개정 대상 법률과 일치시키는 등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정해걸· 조진래 · 권영진 · 박우순 · 임해규 · 이한성 · 박준선·김성수·여상규·이영애 의원 발의)
- 9.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유재중·권영진·권경석· 박민식 · 윤석용 · 최구식 · 이종혁 · 정해걸 · 원희목·조진래 의원 발의)
- 1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 의원 대표발의)(강봉균·안규백·김효석· 주승용 · 최인기 · 김성순 · 김우남 · 이종걸 · 조영택·전병헌·최규식·문학진 의원 발의)
- 1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범구 의원 대표발의)(정범구· 이낙연 · 박은수 · 강기갑 · 이인기 · 박영선 · 조배숙 · 김유정 · 김재윤 · 김영록 · 김효석 의원 발의)
- 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박준선· 김성수 · 정해걸 · 정양석 · 권영진 · 윤석용 · 윤영·이한성·조진래 의원 발의)
- 1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재균·김춘진·박우순· 신건 · 안규백 · 유선호 · 유원일 · 전현희 · 정범구·조경태·주승용 의원 발의)
- 1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정해걸·성윤환·김학용· 최연희 · 강석호 · 이낙연 · 유선호 · 김춘진 · 류근찬 · 김낙성 · 송훈석 · 신성범 · 이윤석 · 김성수・김효석・여상규・김재윤・김우남・ 김영록·조진래·변웅전·황영철 의원 발의)
-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1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 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 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1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19.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식물신품종 보호법안(정부 제출)

(18시21분)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9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10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11항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목재 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 13항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14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 15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농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배 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 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19항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21항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22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먼저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강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대리 강석호**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강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5건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 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ㆍ휴 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림복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을 수립 시행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강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 는 내용입니다.

정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점 등의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국산 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마을공동어항을 추가하고 일정 조 건을 갖춘 비법정 소규모 어항이 마을공동어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법정 소규모 어항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은 어촌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기위한 것이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을 특별수종권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경영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유림영림단이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마 사회의 무분별한 면적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귀책사유의 범위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 무효가 된 경우로 명확히 정하는 등 임원의 요건을 강화 하는 내용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불법어업을 한 외국인이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반환 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함으로써 어구·어획물 등은 그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친

환경농수산식품 인증제도를 통합 일원화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등성에 대하여는 유기농산물을 제외하고 유기가공식품만 검증절차를 거친 후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동 조항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민박사업 등을 농어촌 관광사업의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농 어촌 관광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 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종자산업법 전부개 정법률안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안은 기존의 종자 산업법 중 종자의 관리와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은 종자산업법으로, 식물신품종 등의 출원 심사 등 에 관한 절차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각각 분 리하려는 것으로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종 자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품종보호 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강석호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7건이 아니라 15

그러면 먼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건임을 수정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인 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내 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1인, 기권 3인으로서 농 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이미경 의원님……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 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5인, 기권 5인으로서 어 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5인, 반대 3인으로서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한 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기권 4인으로서 배 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 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유기농민들의, 친환경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반대해 왔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이 농식품위를 통과하여 결국 본회의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이번 친환경농업법 개정안 25조(동등성 인정) 조항이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대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여 국내 유기농민들의 설 자리를 좁히고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체들의 이익에만 초점을 두어 결국 국내 유기농업 기반을 피폐화시킬 우려가 큰 조항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농민단체들이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해 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 25조(동등성 인정) 조항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외국의 정부 또는 인 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검증을 받은 것과 같이 동등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내인증 없이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유통시킬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수입업체들의 인증 비용을 대폭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입을 대폭 늘릴 것입니다. 결국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수입이 급증하게 될 것이고 수입업체들이 큰 이익을 보는 반면, 오랜 세월 어렵게 기반을 마련해 온 국내 유기농 생산 농가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 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식품의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2158억 원가량으로 그중 국내산은 13.7%에 불과합니다. 수입산이 86.3%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결국 외국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동등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국내 유기농민들의 설 자리를 더롭히고 수입업자들의 인증비 절감과 수입 절차를 간소화시키며 유기인증관리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수입업체들의 이익을 불려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외 유기가공식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유기식품의 철저한 관리체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국내산을 원료로 한 유기식품산업 발전은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의 개정안은 통상 압력에 굴복하여 지난 10년간 심혈을 기울 여 육성해 온 국내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어렵게 또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등성 인정과 무관하게 현재 우리 정부는 국 내법에 근거하여 해외 인증기관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충분히 적법하게 해외 인증 기관의 검증으로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이 83%나 유통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개정하여 굳이 동등성 인정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 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법의 개정으로 국내 유기농업 의 기반은 축소되고 유기농민들은 판로가 더욱

줄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수입업자와 가공식품업체들의 이익만 극대화될 것이라는 사 실입니다.

법 개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루어져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18인, 반대 27인, 기권 16 인으로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도 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1인, 반대 4인, 기권 3인 으로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 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식 물신품종 보호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전병헌·조배숙·유선호·김부겸·김성곤· 정장선 · 장병완 · 조영택 · 김우남 · 전현희 · 백재현 · 김재유 의원 발의)
-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전병헌·유선호·김부겸·김성곤·정장선· 장병완 · 조영택 · 김우남 · 전현희 · 백재현 · 김재윤 의원 발의)
-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장 제출)
- 6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동 의원 대표발의)(김성동·김혜성·허원제·원희목· 한선교 · 오제세 · 이애주 · 강명순 · 손숙미 · 이철우 의원 발의)
- 6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8시42분)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방송통 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 정 제64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전병헌 존경 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입니 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사업자가 무선설비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 지로 전자파 흡수율이 등급 표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전기통신설비의 전자파 강도등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보다 다양한 인체 보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의결사항을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인기 의원, 변재일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획득권한을 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주체와 실 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에 한하여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 및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획득 사 실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 안전위원회에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토록 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김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 은 국어의 해외 보급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 한국어세계화재단을 법정법인인 세종학당재단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세종학당 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철 의원님, 안상수 의원님, 정장 선 의원님,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행 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 사행산업의 감시기능을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하고, 둘째 사행산업 범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소싸움경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하고 제안설 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전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전 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2인, 반대 4인, 기권 5인 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국 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 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7인, 기권 6인으로서 사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상은・ る해 · 李玲愛・ 박 준 선・ 홍 준 표・ 이 한 성・ 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 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상은·정해결· 李玲愛・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 김혜성 · 김정 의원 발의)
-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 발의)(이명규·정태근·이진복·김태환· 김성조 · 김태원 · 김선동 · 이화수 · 배은희 · 서상기 의원 발의)
- 2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발의)(노영민·박은수·박우순·김학재· 박지원 · 주승용 · 조경태 · 최종원 · 김진표 · 정동영·강창일·김재윤·김우남·서종표· 장세환 · 오제세 · 신건 · 강봉균 · 박상천 · 노영민 의원 발의)

- 2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윤진식·유성엽· 김효재・현경병・박종근・이애주・강창일・ 김정권 · 이종혁 · 신상진 · 이한성 · 한선교 의원 발의)
- 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2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49분)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의사일정 제23항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24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제품안전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소프트웨 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 29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정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7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경제위원장대리 정태근**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정 태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간절히 개정을 원했던 중소기업제품법 그리고 소프트웨 어산업 진흥법이 18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 게 되어서 중소기업 호민관으로 일했던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출자 공공기관의 이 익준비금 적립 기준을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일하 게 변경하고, 국가에 대한 이익배당을 임의적립 금에 우선하게 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의 국고환수 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분할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되, 그 기업분할 등의 기준 시점은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1일로 하며,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되, 2006년 이후에 기업분할한 기업의 경우 변경된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산 개발에 따르는 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진 탐사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받은 경우에는 허용하였고, 채굴 제한 범위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표 지하 30m 이내에서 50m 이내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 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배은희 의원, 김혜성 의원, 박민식 의 원, 정태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 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업 참여 하한 규 정의 적용과 관련 국가기관 등의 통합발주가 증 가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하 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금액을 "둘 이상의 소프트 웨어 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되, 국방 외교 · 치 안ㆍ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 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 사업 중 유지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 체결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하한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상 인정된 예외 사업중 정보전략계획사업 및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외 사업의 참여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거래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제도와 동 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 자문서의 유통을 전담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 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정태근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지금 과반수가 147석이지요?

의원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한 시간 정도 내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한국가스공사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6인, 기권 4인으로서 광 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제 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으로서 소 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전자거래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 발의)(윤석용·권영진·유재중·유정복· 추미애 · 원희목 · 이춘식 · 이낙연 · 김정권 · 최경희 의원 발의)
- 3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이윤성·이한성· 권영진 · 양승조 · 손숙미 · 박은수 · 전현희 · 원희목·유재중 의원 발의)
-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지위워장 제출)
-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4. 障碍人・老人・姙産婦号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 **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59분)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의사일정 제30항 사회복 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국민영양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3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신상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 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 사업 및 재원 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퇴직연금급여사업은 공제회가 설립 초기임을 고려하여 사업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근거를 삭제하고, 둘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출연금 지원 은 직능단체 성격의 다른 단체 또는 공제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는 대신 에 초기 공제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 습니다.

다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영양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쉽게 임신이 되지 아니하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 태'를 뜻하는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예방접 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 비스,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 제공을 요청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 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진료를 방해할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권역 및지역 외상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체계적인 외상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응급의료기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심야·공휴일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의약품을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위하여 5년 주기의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변경하지 아니하되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인안전상비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품목은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하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 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 또는 심사보 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신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

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사 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국 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7인, 기권 3인으로서 모 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장 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3인, 기권 3인으로서 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21인, 반대 12인, 기권 18 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신영수・이미경・강성천・ 이사철 · 김금래 · 홍영표 · 조원진 · 정진섭 · 김영우 의원 발의)
- 3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 노동위워장 제출)
-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10분)

○의장직무대행 정의화 의사일정 제37항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제40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41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홍영표 존경하는 정의화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5건의 법률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 의장직무대행,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처 간의 협의사항을 반영 하여 공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샘물보전구역 지정 근거의 마련,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샘물보전구역 지정 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 지원, 양벌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개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시책 구체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관리 및 처리방안 마련, 냉매가스의 관리 및 처리 의무규정, 이륜자동차에 대한배출가스 정기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현행과 같이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두고, 시설의 보완 등 조 치를 이행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정기검사 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토양 관련 전문기관 중 토양환경평가기 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한 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8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양승 조 · 주승용 · 김성순 · 김우남 · 조영택 · 정동영 · 유성엽 • 우윤근 • 이시종 • 이낙연 • 정장선 • 김춘 진 · 허태열 · 강기정 · 김성곤 의원 발의)
- 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김소남 · 김정권 · 이한성 · 정영희 · 김성수 · 변재일 · 권경석 · 박희태 · 김정훈 · 원희목 · 이인기 의원 발의)
- 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여상규· 정해걸・백성운・김재경・권영진・신성범・ 조진래·장광근·신영수·정갑윤 의원 발의)
- 4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해양위원장 제출)
- 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 원장 제출)
- 4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 위원장 제출)
-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5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

원장 제출)

## 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해양위원장 제출)

(19시18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42항 해양생명자원 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 일정 제4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45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46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47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50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51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나오 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위원장대리 김기현**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 리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명자원 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해양생명자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해 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 관리를 위한 것으 로서 해양생명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법 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 류터미널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 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예산 지원의 직 접적인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 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복합용도의 건 축물을 일정 규모 이상 용도별로 1인에게 판매하 는 경우 분양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공공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건축물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물류 보안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휴업 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광근 의원, 권경석 의원, 최구식 의원, 유선호 의원, 최 규성 의원, 박기춘 의원, 이명수 의원, 김선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으며,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운전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박은수 의원, 이정선 의원, 임두성 의원, 윤영 의원, 김소남 의원, 장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 중 신체장애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전용철도의 안전관리규정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하여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최규성 의원, 이명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자격 제한을 통해서 공제조합의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말소된 도난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다시 등록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여옥 의원과 홍재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역세권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협의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인정을 위해 토지가격을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특례를 신설하며, 민간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철도시설 부지의 경우 해당 관리청의 동의로소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박상은 의원, 최규성 의원, 현기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수면비행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으로 규정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를 해당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률에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며, 보조항로 운항 선박의 건조비용과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등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 선동 의원, 정옥임 의원,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자전거 운반용 장치 등 외부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별도의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였고, 보험사 기에 가담하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정비업의 취 소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물 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48인, 반대 5인, 기권 1인 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4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도 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철 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5인, 반대 3인, 기권 4인 으로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해 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해양위원장 제출)
- **5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해양위원장 제출)
- 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해양위원장 제출)
- 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5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 위원장 제출)
-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5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 위원장 제출)
- 5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19시33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52항 건설산업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해양 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4 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 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56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56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8항 항 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의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위원장대리 백재현** 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시갑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 통합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 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 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의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홍준 의원, 정해걸 의원,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 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해저광업과 광물 채취,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해역과 육지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피예인선에 선박해양오염 비상계획서 비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기춘의원, 김태원 의원, 윤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가 소재한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9인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박기춘 의원과 곽정숙 의원, 이용 경 의원, 안홍준 의원, 김태원 의원, 장제원 의원, 유선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내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고, 저상버스 도입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비용분담 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기 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한 것으로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 도로구간도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 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며 교통수단 운영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제 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전여옥 의원, 박순자 의원, 강기정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으 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교통안전체험 등의 교 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 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 상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 혜훈 의원,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으로 항만공사의 손익금 중 사업 확장 적립금과 출자자에 대한 배분의 처리 순서를 조정하고, 항만공사는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협상 대상자가 지정 된 이후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비쿼터스도 시 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유 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유비쿼 터스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부담금 납부 대상에 서 개발 후 분양 받는 자를 제외하고 실수요 시 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 기준 및 위반 시 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수요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 제한기간을 공장 설립 완 료 신고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위 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이외에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4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으로서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으로서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1인, 기권 4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기권 3인으로서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3인, 기권 3인으로서 항 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5인, 기권 2인으로서 유 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인, 기권 5인 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 위원장 제출)

(19시45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6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 · 녹색성장특별위원장대리 김재경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위원회의 김재경 의원 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응하고 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 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8인, 기권 3인으로서 온 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성윤환 의원 대표 발의)(성윤환·윤영·김금래·손숙미·강승규· 이경재 · 최인기 · 한선교 · 이낙연 · 안형 환·박준선·김성동·진성호 의원 발의)

(19시47분)

○**부의장 홍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안을 상정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의 존경하는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대리 이한성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이한성 의원입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은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 법안인데 이 법안은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일반법을 마련하여 행정 낭 비를 방지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관 해 일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개별 국제대 회 유치 때마다 해당 지원 법률을 제정하는 불편 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이한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인, 기권 3인 으로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은 평창동계올림픽 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9시50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63항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대리 양승조 존경 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 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저출산ㆍ고령

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산회에 앞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사실상 제18대 국회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대 국회가 역대 최다 직권상정이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기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우리 정치 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길 소중한 자산이 되고 갈 등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유용한 제도로 진화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19대 국회에서는 오늘 통과된 국회법에 따라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국회가 될 수 있기 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의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183인)

### 찬성 의원(18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성종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김 광 림 권 영 세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성수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유 정 김용구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정 김 정 훈 김 재 경 김 진 애 김 창 수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화 김 학 용 김 혜 성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근 혜 노 철 래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천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원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웅 전 배 은 희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낙 균 안 경 률 안 민 석 심 대 평 안 규 백 아 형 화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일 호 유성엽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유 상 일 유 상 현 유 석 용 이 낙 연 윤 진 식 이 미 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상 민 이 성 남 이성헌 이 영 애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선 이 정 현 이 종 걸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회 창 임 동 규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전 혁 조 문 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최경희 진 영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영 희 최종원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조 승 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황우여·

김진표 의원 외 28인 발의)

###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27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승 규 강 창 일 구 상 찬 김 광 림 권 영 진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 곤 김 성 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노 영 민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천 박선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지 워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신 성 송 민 순 신 낙 균 범 신 학 용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여 상 규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성엽 유 선 호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승 민 윤 상 일 이 낙 연 이미경 윤 석 용 이 범 관 이 병 석 이상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영 이 석 현 이 성 남 애 이용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 쳙 이종걸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진 복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구 이혜 훈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세 균 정 영 희 정 장 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원 진 조 정 식 주 광 덕 최 영 희 최 재 성 최규성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정 욱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 반대 의원(48인)

김용 태

심대평

이종혁

정 수 성

최경환

강 기 갑 고 승 덕 권 성 동 권 영 길 김기현 김 무 성 金先東 김 낙 성 김성동 김 영 선 김 재 경 김 창 수 박 준 선 김 학 용 김혜성 박 보 환 배 은 희 변웅전 신 상 진 신 영 수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효 대 윤 상 현 윤 진 식 이경 재 이범래 이정선 이회창 이성헌 임동규 정 두 언 정 몽 준 정양석 정의화 정 진 섭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전 혁 조 해 진 주 호 영 진 영 홍 희 덕 최병국 최종원 황 진 하 기권 의원(17인)

김

유정현

이 한 성

조 승 수

정

송 영 선

이 용 경

이 해 봉

진 성 호

김 을 동

유기준

이 철 우

정희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0인)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구 상 찬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 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표 김 정 김 진 애 김 창 수 김 춘 진 태 워 김 학 용 김 김혜성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상 진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오 제 세 원 회 룡 유기준 유성엽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병석 이 상 권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영 애 이용경 이 윤 석 이정선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현 이종걸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한구 이한성 이 해 봉 임 동 규 이 혜 훈 장 병 완 전 병 헌 전 혀 희 정 두 언 전 재 희 정 동 영 정 병 국 정 몽 준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해 진 주광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성

최병국 최영희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기환 홍 정 욱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신 학 용

기권 의원(2인)

이애주 최경희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59인)

강석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무성 김 부 겸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나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학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재 중 유 일 호 유정현 유 석 용 윤 진 식 이 경 재 이 낙연 이 범 래 이병석 이상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 유 석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철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해 봉 이 하 구 이 한 성 임동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몽 준 정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해 걸 정 희 수 정 하 균 조 경 태 주 광 덕 주 호 영 조 순 형 진 수 희 최경희 최 규 성 최병국 짉 옂 최영희 최 재 성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홍영 표 홍일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홍 재 형 반대 의원(3인)

강기 갑 조 승 수 홍 희 덕

기권 의원(1인)

김을 동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성동 권경석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장 수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정 김 태 워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영 선 박 준 선 변 재 일 박지 워 배 은 희 백성운 서병수 서 종 표 손 범 규 서 상 기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영 수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혜 영 워 희 룡 유 기 준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선 호 유 승 민 유정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범 래 이병석 이상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성 남 이애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장 병 완 전 병 헌 임동규 전 재 희 정 두 언 전 현 희 정 동 영 정몽준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회 정 옥 임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회 수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승 수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희 최경희 최 규 성 진 영 최병국 최 영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홍 영 표 현 기 환 황 영 철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 기권 의원(2인)

이 용 경 조 순 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식 김성동 김성수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진표 김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 성 나 성 린 노 철 래 문 희 상 노 영 민 박 근 혜 박 민 식 박 병 석 박 기 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지 원 서 병 수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환 아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현 유 승 민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윤 진 식 이 범 래 이병석 이상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현 이 주 영 이정선 이종걸 이 철 우 이학재 이 진 복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해 봉 임동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동 영 전 현 희 정 몽 준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태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희 수 조 경 태 정 조 순 형 조 승 수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영 희 추 미 애 최 재 성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 기권 의원(3인)

이 하 구 정 두 언 김 소 남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성동 권경석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동 성 수 김성 곤 김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장 수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나성린 노 영 민 문 희 상 노 철 래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학 규 송광호 송 영 선 손 숙 미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룡 우 윤 근 원 혜 영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인 기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 현 이종걸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동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동 영 정 수 성 정세균 정양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옥 임 정 태 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순 형 조 원 진 주 광 덕 조 승 수 주 호 영 진 수 회 진 옂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기환 홍 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 기권 의원(1인)

김 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7인)

강 명 순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석 호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세연 김성 태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윤 김 장 수 김 재 경 김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정 김 학 용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나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박 민 식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영 선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광호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안 효 대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진 식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석현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 종 혁 이 철 우 이 학 재 이진복 이 춘 석 이 한 구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몽 준 정 수 성 정 세 균 정 영 희 정양석 옥 임 정 의 화 정 정 태 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회 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허원제 허 태 열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영

###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6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광 림 김기 현 김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金先東 김성 태 김세연 김성식 김 성 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김 진 애 김 진 표 정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성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민 식 박 상 천 박 보 환 박 영 선 박선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지 원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백 재 혐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혜 영 오 제 세 워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윤 진 식 이 범 래 이병석 이상득 이 상 권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석현 이 영 애 이용경 이용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현 이종걸 이 정 선 이 주 영 이 종 혁 이진복 이 철 우 이춘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동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현 희 정 몽 준 전 재 희 정 동 영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옥 임 정태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주 광 덕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영희 최 재 성 추미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 반대 의원(1인)

강 봉 균

#### 기권 의원(2인)

정 두 언 이미경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김 광 림 권 성 동 권 영 진 김기 현 김 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나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병 석 박기춘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은 희 백 재 현 서병수 백성운 변 재 일 서종표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상 진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여 상 규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윤 석 용 유정복 유 정 현 이경재 이 낙 연 이미경 유 진 식 이병석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인기 이정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주 영 이정현 이종걸 이종혁 이 철 우 이 진 복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한성 이 해 봉 임동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동 영 정 몽 준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순 형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회 짓 영 최경희 최 규 성 최병국 최영희 최 재 성 추 미 애 허 워 제 허 태 열 홍 영 표 혀 기 화 홍일 표 황 영 철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 기권 의원(5인)

김성 곤 김 진 표 심 대 평 이석현 이 용 경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 현 김 무 성 김 부 겸 김 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수 김성 태 김 성 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태 워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성린 노 영 민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민 식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재 일 백 성 운 서 병 수 서종표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광호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아 민 석 아 형 화 아 홍 준 안 상 수 오 제 세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일호 유 재 중 유선호 유 승 민 유정복 유정현 윤 진 식 유 석 용 이경재 이미경 이 범 래 이 낙 연 이 병 석 이상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영 애 이성남 이 애 주 이용경 이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정 혅 이종걸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철우 이 춘 석 이 해 봉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동 영 정몽준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옥 임 정태근 정진섭 정희수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홍 재 형 황 우 여

#### 반대 의원(3인)

강기갑 金先東 홍희덕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 성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 성 린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천 박선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지 원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종 표 서 상 기 송 광 호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규 백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워 희 룡 우 윤 근 원 혜 영 유 기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 종 걸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춘 석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혀 희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동 영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회 정 옥 임 정의화 정진섭 태 근 정 하 균 정 정희수 정 해 걸 조경태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승 수 주호영 진 수 희 최경희 진 영 최규성 최병국 최 재 성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 기권 의원(4인)

권경석 김진애 박병석 최영희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6인)

장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경석 권성동 권영진 김광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성 곤 김선 동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 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용 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김 장 수 김 재 윤 김 김 재 경 정 김 태 원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환 학 송 김 학 용 김혜 성 김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근 혜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영 아 박 보 환 박 상 첡 박 선 숙 박 우 순 배 은 희 박 준 선 박 지 원 백 성 운 백재 혅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숙 미 손 범 규 손 학 규 송광호 송 영 신 낙 균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성 범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유 기 워 혜 영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이 낙 연 윤 석 용 이경재 윤 진 식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상 권 이상득 이 애 주 이 상 민 이석현 이 영 애 이용 이 윤 석 이 인 기 섭 이정선 이정 쳙 이종걸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한성 이 해 봉 임동규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장 전 현 희 동 정 몽 준 정세 균 정 영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태 근 정 하 균 정 진 섭 정 해 걸 희 수 조 순 형 정 조 경 태 주 광 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최경희 영 최 규 성 최병국 최 영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기환 홍 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이용경

기권 의원(2인)

이성남 정 두 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6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무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성회 김성태 김 세 여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우 남 김 영 록 김 용 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김 진 애 김 춘 진 정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 환 학 송 김 학 용 김 나 성 린 김 혜 성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학 규 송광호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심 대 평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유 기 준 룡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석 용 윤 진 식 윤 이경재 이 낙 연 이미경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 이 용 섭 경 이정선 이정 혅 이 종 걸 이 윤 석 이 주 영 이 철 우 이종혁 이 진 복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몽 준 정양석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정 옥 임 옂 회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조 전 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성 최영희 최 재 성 추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4인)

손숙미 이병석 이석현 이인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투표 의원(161인)

#### 찬성 의원(118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석호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택 기 김 낙 성 김 광 림 김 기 현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겸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 태 김성수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우 남 김 을 동 김 김 진 표 김 재 경 정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원 김 태 환 나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박 준 선 백 성 운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윤 석 이정선 이 주 영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동규 장 병 완 정 두 언 전 병 헌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순 형 조 원 진 주 광 덕 조 전 혁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성 허 태 열 최병국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반대 의원(27인)

강 기 갑 강 명 순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식 김 영 선 김용구 김 재 윤 김 진 애 노 영 민 박 병 석 박선숙 손 학 규 이 낙 연 심 대 평 양 승 조 이미경 이용경 이진복 전 재 희 정 동 영 조 승 수 최경희 최 영 희 최 종 원 추 미 애 홍 희 덕

#### 기권 의원(16인)

권 영 진 김 장 수 김 춘 진 김 영 록 박 지 원 김혜성 박 상 천 박 영 선 백 재 현 서종표 우 윤 근 이 용 섭 이 해 봉 전 현 희 주 호 영 최 재 성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7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 성 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선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우 윤 근 원 희 룡 여 상 규 원 혜 영 유 기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정 현 유 재 중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이미경 이 범 래 이상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섭 이 윤 석 이정선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동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회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회 영 진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영희 허 원 제 최종원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 기권 의원(3인)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주 호 영

추 미 애 이용경 황 진 하

###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흥길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무성 김동철 김 낙 성 김 부 겸 김선 동 김성동 김 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용구 김 소 남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형 변 재 일 서 병 수 손 범 규 서 상 기 서종표 손 숙 미 손 학 규 신낙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이경재 유정현 윤 석 용 이 낙 연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용섭 이 윤 석 이정선 이 진 복 이 주 영 이 철 우 이 찬 열 이춘석 이 학 재 이 하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장 병 완 전 병 헌 임동규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옥 임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정 해 걸 조 경 태 조 순 형 진 수 희 영 최경희 최규성 진 최병국 최영희 최종원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허 태 열 현 기 환 홍일 표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홍 희 덕 강 기 갑 金先東 조승수 기권 의원(3인) 김 영 선 이미경 정양석

###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5인)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동 김 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 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우 남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학 송 김 혜 성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워 백 성 운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성 범 신 학 용 심대평 안 규 백 안 경 률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이미경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상 민 이 애 주 이용경 이 성 남 이 영 애 이 주 영 이 용 섭 이 유 석 이정선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장 병 완 임 동 규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옥 임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순 형 정 해 걸 조 경 태 조 승 수 주 광 덕 주 호 영 조 전 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최종워 추 미 애 허원제 홍 영 표 홍일 표 허 태 열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강기갑 金先東 홍희덕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회 조 전 혁 최경희 최병국 진 영 최규성 최 영 희 최종워 추 미 애 허 원 제 현기환 홍 영 표 홍 희 덕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김장수 이상득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4인)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희 수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권 택 기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남 경 필 문 희 상 박 근 혜 노 영 민 노 철 래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박지 원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신 낙 균 신 상 진 신 학 용 신 성 범 신 영 수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 일 호 유 재 중 유기준 유선호 유정복 유 석 용 유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 미 경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상 민 이 석 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 주 영 이 종 걸 이 진 복 이 학 재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구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동 영 정 두 언 정병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학 용 김혜성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노 철 래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천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범 규 서종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신 성 범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미경 이 범 래 이 상 득 이 상 권 이 상 민 이석현 이 애 주 이성남 이 영 애 이용경 이용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동 영 정 두 언

정병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조경태 정 하 균 정희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워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최 영 희 최규성 추 미 애 최종원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 기권 의원(1인)

김 장 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우 남 김세연 김 소 남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선숙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서 종 표 수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성 범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회 룡 유 일 호 유 재 중 유기준 유선호 유정복 유 진 식 이경재 유 석 용 이낙연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애 주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용경 이 용 섭 이 유 석 이정선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옥 임 정 진 섭 정 영 희 정의화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정 회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순 형 주호영 진 수 희 최경희 진 영 최 규 성 최병국 최 영 희 최종원 추 미 애 허 원 제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강 기 갑 金先東 김 영 선 조 승 수 기권 의원(5인) 김 영 록 심대평 이미경 이종걸 홍 희 덕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2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광 림 김 동 철 김 낙 성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 곤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재 경 김 재 윤 김 김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정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민 식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원 백 재 현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안 경률 심대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아 형 화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일 호 유재중 유정복 유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미경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종걸 이 주 영 이 찬 열 이진복 이 철 우 이학재 이 한 구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해 봉 임동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정 동 영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옥 임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태근 정희수 조경태 정 하 균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최 영 희 최 규 성 추 미 애 최종원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기권 의원(1인)

정 양 석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57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무성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남 경 필 박 근 혜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숙미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심대평 신 영 수 안 경률 안 형 환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 승 민 유 재 중 윤 석 용 유정복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용 섭 이 주 영 이진복 이정선 이 종 걸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구 이한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현 희 전 재 희 정 두 언 병 국 정 동 영 정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 옥 임 정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경태 조 순 형 조 원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회 조 전 혁 최경희 진 영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원제 현기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우 여 황 영 철 황 진 하

#### 기권 의원(6인)

찬성 의원(150인)

장기갑 김우남 안상수 조승수 최종원 홍희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권경석 권성동 권 택 기 김기현 김 광 림 김 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겸 김선 동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김 재 윤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태 원 김 춘 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박 근 혜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서병수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손 학 규 송 영 선 손 숙 미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윤 석 용 윤 진 식 이 경 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석혂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용 경 이 용 섭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전 재 희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장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순 형 주 광 덕 조 승 수 조 워 진 조 전 혁 주호영 진 수 희 진 영 최규성 최병국 최영희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7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권경석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길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우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민 식 박 병 석 박기춘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지 원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영 선 신낙균 신 상 진 심대평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아 형 환 아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혜 영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정복 유 일 호 유 재 중 윤 석 용 이경재 이 범 래 윤 진 식 이석현 이상권 이상득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정현 이 철 우 이 학 재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하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동규 장 병 완 전 재 희 정 두 언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희수 정 하 균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진 수 희 조 전 혁 주 호 영 최경희 최병국 짉 영 최규성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회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6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권경석 권성동 권 영 길 영 진 권 택 기 권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소 남 영 선 김용구 김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정 김 춘 진 김 태 원 태 환 김 학 송 김 김 학 용 김혜성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민 식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숙 박 영 선 박 지 원 박 우 순 박 영 아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안 경률 심대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상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정현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종 걸 이 진 복 이 철 우 이춘석 이학재 이 하 구 이 한 성 이해 봉 이혜훈 임 동 규 장 병 완 정 두 언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수 성 정세 균 정 영 희 옥 임 정 장 선 정 정 의 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회 조 전 혁 최병국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영희 추 미 애 허원제 홍 영 표 홍일 표 황 우 여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진 하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동 철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우 남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 성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기 춘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아 형 환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윤 석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7인)

이인기

이 주 영

이 춘 석

이 해 봉

전 재 희

정 병 국

정 옥 임

정 태 근

조 순 형

주 광 덕

최경희

추 미 애

홍 희 덕

김용구

기권 의원(4인)

이정선

이진복

이 학 재

이 혜 훈

전 현 희

정세 균

정의화

정 하 균

조 승 수

주 호 영

최규성

허 원 제

황 영 철

김 진 표

이정현

이 찬 열

이 한 구

임동 규

정 수 성

정

정 장 선

정

두 언

희 수

조 원 진

진 수 희

최병국

홍 영 표

황 우 여

워 혜 영

이 종 걸

이 철 우

이 한 성

장 병 완

정몽준

정 영 희

정 진 섭

조 경 태

조 전 혁

최 영 희

홍 일 표

황 진 하

유정복

영

진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소 남 영 선 김용구 김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정 김 춘 진 김 태 원 태 환 김 학 송 김 김 학 용 김혜성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민 식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숙 박 영 선 박 지 원 박 우 순 박 영 아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밴 재 혀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학용 신 영 수 심 대 평 안 경 률 안 민 석 아 형 화 아 규 백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윤 석 용 윤 진 식 이 범 래 이경재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용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학 재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하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동규 장 병 완 전 재 회 정 두 언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옥 임 정 영 희 정 장 선 정의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승수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희 최 병 국 짓 옂 최경희 최 규 성 최 영 희 홍 영 표 추 미 애 허 원 제 홍일 표 홍 회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기권 의원(3인)

손 숙 미 신 성 범 이혜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 광 림 김기현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소 남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김 진 애 김 재 윤 정 김 태 원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영 선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심대평 신 영 수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워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상 민 이 석 현

####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정선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 주 영 이진복 이정현 이 종 걸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 임 동 규 훈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병국 정 수 성 정 세 균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장 선 정 의 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주호영 진 수 회 진 영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최경희 허원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회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기권 의원(1인)

조 승 수

###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수 성 태 김 성 회 김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소 남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김 진 애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노 영 민 김혜성 박기춘 문 희 상 박 근 혜 노 철 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우 순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준 선 박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학 규 손 범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상 진 안 경률 심대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워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윤 석 용 윤 진 식 이 경 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정현 이 종 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장 병 완 전 재 희 임동규 정 두 언 정 병 국 전 현 희 정 몽 준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장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순 형 주 광 덕 조 승 수 조 워 진 조 전 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영희 추미애 허 원 제 황 영 철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정현 이 학 재 이 철 우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하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훈 장 병 완 임 동 규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옥 임 정 장 선 정 영 희 정 진 섭 정 태 근 정희수 정 하 균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전 혁 주 광 덕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추 미 애 최 규 성 허 워 제 홍 희 덕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기권 의원(1인)

최 영 희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었다.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무성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진 애 김 태 원 김 태 환 김 진 표 김 학 송 김 학 용 노 영 민 김 혜 성 박 근 혜 박 기 춘 노 철 래 문 희 상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서 병 수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숙미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상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택 기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길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소 남 영 선 김용구 김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김 진 애 김 진 표 김 태 원 정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신 영 수 심 대 평 안 경 률 안 민 석 아 형 화 아 규 백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훈 임동 규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병국 정세 균 정수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태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전 혁 주 광 덕 진 수 회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추 미 애 최 규 성 허 워 제 혀 기 화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우 여 황 진 하 홍 희 덕 황 영 철

#### 기권 의원(1인)

최영희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우 남 김 소 남 김 영 록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정 김 김 진 애 김진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성 린 노 영 민 박 근 혜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숙미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우 유 근 양 승 조 오 제 세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재중 윤 석 용 윤 진 식 이상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석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성 남 이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 종 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해 봉 장 병 완 이 한 성 임 동 규 정 병 국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장 선 진 섭 정 태 근 정의화 정 정희수 조경태 조 순 형 정 하 균 주광덕 진 수 희 조 승 수 조 전 혁 진 최병국 추 미 애 허 원 제 영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 영 선 이 상 민 이 혜 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수 김 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정 진 애 김 진 표 김 김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성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석 현 이성남 이애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장 병 완 이혜훈 임 동 규 정 병 국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승 수 진 수 희 최경 진 영 회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기환 홍 일 표 홍 희 덕 홍 영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障碍人・老人・姙産婦長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용구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태 원 김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학 송 김 혜 성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선 숙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서 병 수 일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동규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수 성 정 몽 준 정병국 정세 균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장 선 정 의 화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 순 형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진 수 희 진 영 조 전 혁 최병국 최 영 희 최경희 최규성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기권 의원(1인)

이 혜 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성 곤 김성동 김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김 진 애 김 진 표 김 태 원 정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나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노 철 래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천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워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석 용 유 정 복 이경재 윤 진 식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유 석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정선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동규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장 선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원 진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전 혁 주 광 덕 진 수 희 영 진 최경희 최병국 최 영 희 최 규 성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현 기 환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기권 의원(3인)

김성회 우 윤 근 이 혜 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20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흥 길 권경석 김 광 림 권 택 기 김 무 성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철 김 부 겸 김선 동 김성 곤 김성수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학 송 김 정 김 진 애 김 태 환 김 학 용 김혜성 나 성 린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화 박 상 천 박 선 숙 백 성 운 변 재 일 서 병 수 배 은 희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숙미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양 승 조 우 윤 근 원 희 룡 유 선 호 유기준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진 식 이경재 이상득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춘 석 이 한 구 이 해 임동 규 장 병 완 봉 전 현 희 정병국 정 몽 준 정세균 정수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장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조경태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전 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 병 국 최영희 추 미 애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2인) 김 상 희 강 기 갑 권 영 길 金先東 김성식 김 영 선 박 준 선 백 재 현 안 홍 준 전 재 희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19인) 김성회 강 명 순 권 영 진 김성동 김 재 경 김 진 표 김 태 원 노 영 민 박 영 아 박 우 순 손 학 규 안 효 대 오 제 세 유 재 중 윤 석 용 이 한 성 조 승 수 정 회 수 허 워 제 (손학규 의원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120인, 기권 의원 19인임)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창 일 강석호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 곤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태 김세연 김성식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장수 김 재 경 김 진 애 김 태 원 김 정 김 진 표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나성린 노 영 민 문 희 상 노 철 래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회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서 종 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성 범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희 룡 유기준 유 승 민 유 선 호 유정복 유일호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석현 이 애 주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훈 임동규 장 병 완 정 몽 준 전 재 희 전 현 희 정병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세 균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순 형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영 진 최경희 최병국 최 영 희 최규성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현 기 환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기권 의원(1인)

이 찬 열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임 동 규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권경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우 남 김 소 남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태 워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근 혜 노 철 래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종 표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학 용 신 성 범 신 영 수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석 용 이경재 이 범 래 유 진 식 이상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정현 이 용 섭 이 유 석 이정선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구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몽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회 정 장 선 정 태 근 정의화 정 진 섭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원 진 주 광 덕 진 영 조 승 수 최경희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워 제 홍 영 표 현 기 환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안 홍 준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성동 권경석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용구 김 우 남 김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김 진 애 김 태 원 김 태 환 정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 성 린 노 영 민 남 경 필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선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 기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정 복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득 이 상 권 이 상 민 이 석 혀 이 애 주 이성남 이 영 애 이용경 이용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 주 영 이 종 걸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훈 임 동 규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의화 조 경 태 정 하 균 정희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영 진 최경희 최병국 최 영 희 최규성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현 기 환 홍 희 덕 홍일 표 황 영 철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남경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0인, 기권 의원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48인) 찬성 의원(148인)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무성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 성 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우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김 태 원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성 범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원 희 룡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정 복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임 동 규 전 재 희 장 병 완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태근 정 장 선 정 진 섭 정희수 조 원 진 정 하 균 조 경 태 주광덕 진 영 최경희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워 제 홍 영 표 홍 재 형 현 기 환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金先東 김성식 김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천 박 보 환 박선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종표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윤 석 용 이경재 윤 진 식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용 섭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찬 열 이 학 재 이 춘 석 하 구 이 한 성 이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진 영 최 경 희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김 진 애

황 영 철

홍 희 덕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동 김성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소 남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정 김 학 송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선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서병수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양 승 조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 범 래 이 상 권 이경재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성 남 이애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유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한성 전 재 희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혀 희 정몽준 정병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경태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영 최경희 진 최 규 성 최병국 최영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기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황 우 여

황 진 하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동 김성 곤 김성수 金先東 김 성 동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소 남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신 영 수 심 대 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양 승 조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유 승 민 윤 석 용 윤 진 식 이 범 래 이경재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애 주 이 성 남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종걸 이정현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한성 임동규 이 해 봉 장 병 완 전 재 희 정 몽 준 병 국 전 현 희 정 정세균 정양석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영 최경희 최규성 진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이용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4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김기 현 권경석 권 영 진 김 광 림 김 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동 김성 곤 김성수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 영 록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유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정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화 양 승 조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범 래 윤 진 식 이석현 이상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용섭 이정선 이정현 이 윤 석 이 주 영 이 종 걸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춘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양석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장선 정 태 근 정의화 정희수 정 하 균 조경태 조 순 형 조 원 진 주 광 덕 진 영 최경희 추 미 애 최 규 성 최병국 최영희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일 표 현 기 환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5인)

강기 갑 권 영 길 金先東 조 승 수 홍 희 덕

기권 의원(1인)

김성식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동 김성 곤 김성수 金先東 김 성 동 김성식 김성 태 성 회 김세연 김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소 남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신 영 수 심 대 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양 승 조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 범 래 이경재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애 주 이 성 남 이 영 애 이 용 경 이용 섭 이 윤 석 이정현 이정선 이 종 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한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전 재 희 정몽준 헍 전 현 희 정양석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경태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광덕 진 영 최경희 최 규 성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표 홍재형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김 정 정하균 (윤석용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53인, 찬성 의원 151인임)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 찬성 의원(151인)

황 영 철

기권 의원(2인)

황 우 여

황 진 하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길 권 영 진 김 낙 성 김 광 림 김 동 철 김 기 현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수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선 김용구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애 김 태 원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보 환 박 병 석 박 상 천 박선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손 학 규 서종표 손 범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학 용 신 성 범 신 영 수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우 윤 근 양 승 조 오 제 세 원 희 룡 유 기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석현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양석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태근 정 회 수 조경태 주 광 덕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 병 국 최영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홍 일 표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 찬성 의원(150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무성 김 부 겸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영 선 김용구 김 소 남 긲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성린 노 영 민 박 기 춘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선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회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석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상 민 이용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 종 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학재 이 춘 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병 국 정 몽 준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장선 정양석 정 의 화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광덕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현 기 환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기권 의원(1인)

이성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길 권 영 진 김 낙 성 김 광 림 김 동 철 김 기 현 김무성 김 부 겸 김선 동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수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 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 영 록 김 우 남 김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표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백 성 운 백재 변 재 일 서 병 수 현 손 학 규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신 상 진 신 학 용 신 성 범 신 영 수 심 대 평 안 경 안 규 백 안 민 석 률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우 윤 근 원 희 룡 양 승 조 오 제 세 유 기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석 현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 이 용 섭 경 이 윤 석 이정선 이정 혅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허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병국 정세 균 정양석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태근 정 회 수 정 하 균 주 광 덕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 병 국 최영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나성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6인)

강 석 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성 곤 김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 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우 남 김용구 을 동 김 장 수 김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나성린 남 경 필 박 근 혜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선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범 규 서 종 표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용 신 영 수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아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정 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 범 래 이 경 재 이 상 권 이상득 이석현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종걸 이정 현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춘 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태 근 정 하 균 정 조 순 형 정 희 수 조 승 수 조 워 진 주 광 덕 최 병 국 진 영 최 규 성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반대 의원(3인)

강 기 갑 金先東 홍 희 덕

#### 기권 의원(3인)

권 영 길 김 진 애 이 용 경 (박영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46인, 기권 의원 3인임)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무성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혜 성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배 은 희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변 재 일 백성운 백 재 현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학 규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상득 이 상 민 이상권 이석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한성 이 해 봉 이혜훈 임동규 장 병 완 전 현 희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몽 준 병 국 정 수 성 정 정세균 정양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장선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순 형 주 광 덕 조 승 수 조 워 진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최 영 희 최 규 성 현 기 환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이 성 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진 권 영 길 김 광 림 김기 현 김동철 김 낙 성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노 철 래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선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손 학 규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정 복 유일호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현 이 주 영 이정선 이 종 걸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훈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현 희 정 몽 준 정병국 전 재 희 정 수 성 양 석 정 영 희 정세 균 정 정 장 선 정의화 정태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진 옂 최경희 최 규 성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 기권 의원(2인)

긲 정 이 성 남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낙 성 김 광 림 김 동 철 김 기 현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수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선 김용구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우 남 김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표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나성 린 남 경 필 성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양 승 조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이경재 윤 진 식 이범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애 주 이성 남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정선 이 윤 석 이 주 영 이정현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임 동 규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병 국 정양석 정 정세 균 정 수 성 영 회 정장선 정 태 근 정 정 의 화 정희수 정 하 균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해 진 주 광 덕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현 기 환 홍 재 홍일 표 형 홍 회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기 김 낙 성 김 현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동 김 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 성 태 김성회 김 영 선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태 워 김 태 화 긲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병 석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안 경률 심 대 평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윤 근 워 희 룡 유기준 유 정 복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석 현 이용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정 혅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재 희 전 현 희 전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 승 수 조 해 진 주 광 덕 조 워 진 진 영 최 병 국 추 미 애 최 규 성 최영희 허 원 제 현 기 환 홍영 표 홍일 표 황 우 여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진 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영 길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 낙 성 김기 현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성 태 김 우 남 김 소 남 김용구 김 영 록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윤 김 재 경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환 김혜성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박 근 혜 노 철 래 문 희 상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박 준 선 백 성 운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윤 상 현 유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성남 이석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주 영 이정선 이정 현 이종걸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임동규 장 병 완 전 병 전 재 희 허 전 현 희 정 병 국 정 몽 준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해 진 주 광 덕 영 진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워 제 현기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이용경

#### (대안)

###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6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부 겸 김 상 희 김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을 동 김 장 수 김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태 원 김 태 환 김 김 학 송 김 학 용 혜 나성 린 김 성 노 영 민 남 경 필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영 아 박 우 순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준 선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일 호 유 승 민 유 정 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석 현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0]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장 병 완 임 동 규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병 국 정세 균 정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해 진 주 광 덕 짉 영 최 경 회 최 규 성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김재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6인, 기권 의원 없음)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진 권성동 권 영 길 김 광 림 김 동 철 김 기 현 김 낙 성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 태 김세연 김성식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노 철 래 박 근 혜 문 희 상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은 희 박 준 선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원 희 룡 오 제 세 우 윤 근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윤 석 용 유정복 윤 상 현 유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석현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주 영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한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훈 임동규 장 병 완 전 병 헍 정 병 국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해 진 주 광 덕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워 제 홍일 표 현기환 홍 영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기권 의원(3인)

김 진 애 손 숙 미 조 원 진 (이혜훈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52인, 기권 의원 3인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기 현 김 낙 성 김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동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 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선 김 소 남 김 영 록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화 김 학 용 김 학 송 김 혜 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규 백 안 경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희 룡 유 선 호 유기준 유 일 호 윤 상 현 유 승 민 유정복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애주 이성남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종걸 이정현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장 병 완 임 동 규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몽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장선 정태근 정희수 정 하 균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최경희 조 해 진 진 최병국 추 미 애 최 규 성 최영희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기권 의원(2인)

안 민 석 조 순 형 (손학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3인, 기권 의원 2인임)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길 김기현 김 낙 성 권 영 진 김 광 림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겪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소 남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진 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아 형 환 아 홍 준 아 효 대 우 윤 근 원 희 룡 양 승 조 오 제 세 유 기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석 현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용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훈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허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해 진 주 광 덕 진 영 최경희 추 미 애 최 규 성 최병국 최영희 허 원 제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기권 의원(3인)

김태환 신낙균 신상진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선 동 김 동 철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노 철 래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재 현 백 성 운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종 표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 기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 범 래 이경재 이상득 이석현 이 상 권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한성 이 해 봉 이혜훈 임동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병국 정 몽 준 세균 정 수 성 정 정 영 희 정양석 정의화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순 형 주 광 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해 진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성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기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 상 희 김 진 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5인)

#### 찬성 의원(15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길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 낙 성 김 기 현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겸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춘 진 김 학 송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혜 성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섭 이 윤 석 이정선 이 주 영 이진복 이정현 이 종 걸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훈 임동규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몽준 정 수 성 정 병 국 정 세 균 정양석 정 장 선 정 영 희 정의화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해 진 주 광 덕 진 영 최병국 최 영 희 최경희 최규성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이 용 경

기권 의원(4인)

김 상 희 손 숙 미 이 석 혀 조 승 수 (손학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0인, 기권 의원 4인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8인)

강석호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영 길 김기 현 김 광 림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세연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영 록 김용구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근 혜 박 민 식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재 현 서 병 수 백 성 운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윤 근 오 제 세 원 회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상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정선 이종걸 이 윤 석 이정현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차 열 이 학 재 이 해 봉 이 춘 석 이 한 구 이 혜 훈 장 병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하 균 정태근 정희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조 해 진 진 영 최경희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3인)

이 한 성 정 몽 준 황 진 하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4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구 상 찬 고흥길 권경석 김 광 림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영 록 김세연 김 소 남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김 진 애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서병수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심대평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이경재 윤 진 식 이 범 래 이상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애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유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한성 전 재 희 이혜훈 임 동 규 장 병 완 전 혀 희 정몽 정병국 정세 균 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하 균 정희수 조 순 형 조 워 진 주 광 덕 조 해 진 영 진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반대 의원(4인)

강기갑 金先東 조승수 홍희덕 **기권 의원(3인)** 박선숙 이성남 정태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동 김성식 金先東 김 성 수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진 애 김 김 진 표 김 춘 진 정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혜성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기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재 일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성 범 심대평 안 규 백 신 학 용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유기준 유 승 민 유 선 호 유일호 유정복 윤 상 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상 권 윤 진 식 이 범 래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훈 임 동 규 장 병 완 전 재 희 정몽준 전 병 헍 젉 혀 희 정 병 국 정수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장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해 진 주 광 덕 영 최경희 진 최규성 최병국 최영희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출석 의원(217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성종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구 상 찬 고 흥 길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성 곤 김선 동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창 수 김 태 환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선숙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배 은 희 백 성 운 박 준 선 박 지 원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민 순 송 광 호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회 룡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유 정 현 유 재 중 윤 상 일 윤 상 현 유 석 용 윤 진 식 이미경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범 관 이 범 래 이병석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훈 이회창 임 동 규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옥 임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태근 정 진 섭 정 해 걸 희 수 정 하 균 정 조 경 태 조 순 형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용 주호영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영 최 경 환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재 성 최종원 최 추 미 애 허 워 제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개의 시 재석 의원(18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영 진 김 광 림 김 낙 성 김동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김용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정 김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혜 성 나 성 린 김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노 철 래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숙 박 상 천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웅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심대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혜 영 유성엽 유 일 호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정 복 유 재 중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 범 관 이 병 석 이미경 이 범 래 이 상 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성남 이 용 경 이성헌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정 선 이 정 현 이종걸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해 봉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회 창 임동규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두 언 정범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옥 임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의 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조경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옂 최경희 최병국 최 영 희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허원제 현기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산회 시 재석 의원(15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 창 일 강석호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우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긲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노 철 래 박 근 혜 박기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천 박 영 아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우 순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유 상 현 유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현 이 종 걸 이정선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혜훈 임 동 규 장 병 완 전 현 희 정 몽 준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조 순 형 정 희 수 조 승 수 조 원 진 주 광 덕 영 최경희 조 해 진 진 최병국 최 영 희 추 미 애 최규성 허 원 제 홍 영 표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 ○출장 의원(2인)

강기정 박 진

#### ○청가 의원(20인)

강성 천 김 옥 이 김성순 김 영 우 류 근 찬 김 학 재 박선 영 박 은 수 박 주 선 배 영 식 원 유 철 원 희 목 이재선 임 해 규 장 윤 석 정갑윤 조 영 택 조 진 래 최연희 한 기 호

####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윤 원 중 입 법 차 장 김 성 곤 사 국 하 공 식 의 장

#### ○출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 광 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 용 규 지식경제부장관 홍 석 우 보건복지부장관 임 채 민 환 경 부 장 관 유 영 숙

#### ○출석 정부위원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 만 희 국무총리실국무차장 육 동 한 방송통신위원장 이 계 철

#### 【보고사항】

#### ○의원 퇴직

. – -	선거구			연월일
2] 24 2]	મી ચીનો 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사망	2012.
[신경식	미데내표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가망	4. 27

####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장애인에대한성			2012.
폭력등인권침해	심재철	새누리당	
방지대책특별			4. 24
세계박람회	기서고	미즈트치다	2012.
지원특별	김성곤	민주통합당	4. 24

###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토해양	김기현	새누리당	2012. 2. 27
행정안전	이윤석		
세계박람회지원 특별	주승용	민주통합당	2012. 4. 24
장애인에대한성	안효대	새누리당	
폭력등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	장병완	민주통합당	

###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bigcirc$ o $\square$	1권 시김 및	ㅗㅁ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이정현	비케기카베	환경노동		
주성영	법제사법	보건복지	새누리당	2012.
이정선	환경노동	법제사법	새구덕성	3. 2
최경희	보건복지	답세사업		
천정배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민주	2012.
이상민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교육과학기술	통합당	3. 8
최경희	법제사법	보건복지		
이정선	법제사법	환경노동	게 느 키 다	2012.
주성영	보건복지	법제사법	새누리당	4. 18
이정현	환경노동	법제사법		
문학진	행정안전	지식경제		2012.
조정식	지식경제	행정안전		4. 20
백원우	행정안전	지식경제		
강창일	지식경제	행정안전		
최규식	행정안전	국방	미ス	
안규백	국방	행정안전	민주 토치다	2012
오제세	기획재정	생성인신	통합당	2012. 4. 23
조정식	행정안전	지식경제		4. 23
장세환	] 생생인선	기획재정		
문학진	지식경제	국토해양		
최규성	국토해양	행정안전		
천정배	문화체육관광	기획재정		
전혜숙	방송통신	교육과학기술		2012.
이종걸	기획재정	문화체육관광		4. 30
안민석	교육과학기술	방송통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	김호연	이학재	새누리당	2012. 4. 17
	이두아	김태원		
운영	윤영	이영애		4. 17

	박우순	강기정		0010
	이윤석	백재현	민주통합당	2012. 4. 17
국회	김재윤	최규성		7. 17
운영	이학재	김호연		2012
	김태원	최경희	새누리당	2012. 4. 18
	이영애	이정선		4. 10

###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여상규		게느리다	2012.
예산결산	97811	•	새누리당	3. 12
특별	가 서 주	고나 게 취	민주통합당	2012.
	강성종 장세환	인구중합정	4. 24	
장애인에대	김용태	이두아		
한성폭력등	박민식	배은희	새누리당	2012.
인권침해방	신영수	강명순	개구덕정	4. 24
지대책특별	정옥임	손숙미		
세계박람회	_	노영민	민주통합당	2012.
지원특별	•	그경인	인구중합정	4. 24

###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	- · · — · ·	•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허천	새누리당		2012. 3. 7
박주선	민주통합당		2012. 3. 1
이윤성	· 새누리당		2012. 3. 8
전여옥	71148		2012. 3. 8
최인기	민주통합당	탈당	2012. 3. 9
최병국	새누리당		2012. 3. 12
김충조			2012. 3. 13
강봉균	민주통합당		2012. 3. 14
조영택			2012. 5. 14
장광근	새누리당	퇴직	
정미경	새누리당		2012. 3. 15
김재균	민주통합당		
유정현	새누리당		2012. 3. 18
신건	민주통합당		2012. 3. 19
배영식	새누리당		2012. 3. 20
김희철	ロスミえに	탈당	
조배숙	민주통합당		
이명규			2012. 3. 21
김성조	- 새누리당		2012. 5. 21
성윤환	] 세구덕경   		
진성호			

### ○의원 당적 변경

의원명	선거구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전여옥	서울 영등포 갑	새누리당	국민생각	2012. 3. 9
이진삼	충남 부여· 청양	자유선진당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12. 3. 14

#### ○의안 제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2. 2. 28 박순자·홍일표·김동성·이영애· 김태원·김을동·김정·최경희·윤상현· 박보환·정해걸 의원 발의)

2월 29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2. 2. 28 박순자·홍일표·김동성·이영애· 김태원·김을동·김정·최경희·윤상현· 박보환·정해걸 의원 발의)

2월 2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 국회의원(강용석) 사직의 건

(2012. 2. 29 강용석 의원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2. 29 이화수·윤영·윤상일·이정선· 박영아·김성수·김학용·정해걸·이애주· 최경희·강명순 의원 발의)

3월 2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12. 2. 29 한국방송공사사장 제출)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12. 2. 29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2. 2. 29 김소남·김성수·신성범·김학송· 강길부·이정선·원희목·조진래·조문환· 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2. 29 이화수·윤영·윤상일·이정선· 박영아·김성수·김학용·정해걸·이애주· 최경희·강명순 의원 발의) 3월 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2. 2. 29 김소남·김성수·신성범·김학송· 강길부·이정선·원희목·조진래·조문환· 유성엽 의원 발의)

3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2. 3. 2 김성태·황영철·권영진·정갑윤· 강성천·최경희·이병석·김세연·주광덕· 김성식·신영수 의원 발의)

3월 5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2. 3. 5 이병석·김성태·안형환·이철우· 조진형·김을동·김성동·허원제·강승규· 한선교 의원 발의)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2. 3. 5 박기춘·이경재·주성영·최규성· 박지원·김희철·우윤근·조정식·최영희· 전병헌·류근찬 의원 발의)

3월 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 발의)

(2012. 3. 6 김재경·조전혁·권성동·김태환· 김정훈·김성회·이주영·이화수·이학재· 이상권 의원 발의)

3월 7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12. 3. 22 정장선·김성곤·전혜숙·김춘진· 원혜영·천정배·김재균·김영진·김부겸· 조영택·강창일·조배숙 의원 발의)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2011회계연도 (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 결산서

(2012. 3. 27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제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 (2012. 4. 16 국방위원장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2012. 4. 19 허원제·원희목·최경희·강승규· 김성동·진성호·박영아·이종혁·조진형· 현기환 의원 발의)

4월 2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경찰청장후보자(김기용) 인사청문요청안

(2012. 4. 19 대통령 제출)

4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유재풍) 추천안

(2012. 4. 23 의장 제의)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 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2. 4. 23 김정훈·박준선·이주영·주성영· 정갑윤 · 이정현 · 이은재 · 유재중 · 유일호 · 김광림 의원 발의)

4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2. 4. 25 곽정숙・권영길・金先東・선경식・ 강기갑 · 심재철 · 이정희 · 홍희덕 · 조승수 · 박은수 의원 발의)

4월 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012. 4. 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2. 5. 2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2. 4. 3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

(2012. 5. 2 국방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2011. 12. 9 우제창·강성종·김정·신건· 양승조 · 이경재 · 이사철 · 이성남 · 정장선 · 조영택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정무위원장 보고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10. 3. 18 한선교·황우여·이한성·김성회· 김무성 · 박대해 · 이성헌 · 김효재 · 유성엽 · 김을동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0. 8. 18 강창일·조정식·이미경·김재윤· 최규성 · 노영민 · 이윤석 · 김영진 · 문학진 ·

추미애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2010. 7. 16 이종걸·정동영·박영선·최문순· 안규백 · 김재균 · 장세환 · 안민석 · 이석현 · 변재일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 발의)

(2010. 3. 26 이혜훈·김우남·조경태·백재현· 김성태 · 고승덕 · 안홍준 · 박상은 · 이정희 · 워희룡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4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8. 7. 30 최인기·문학진·신낙균·정장선· 최규성 · 안민석 · 이용섭 · 박주선 · 이화수 · 김성곤 · 김종률 · 김유정 · 박상돈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8. 9. 8 변재일・최규식・송광호・추미애・ 송영길 · 김희철 · 김성순 · 이애주 · 이혜훈 · 구본철 · 최규성 · 김효석 · 서상기 · 양승조 · 이시종 · 노영민 · 홍재형 · 오제세 · 진영 · 김종률 · 김태환 · 김진표 · 박주선 · 나경원 · 공성진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9. 8. 25 신상진·이한성·박준선·유기준· 임동규・김장수・신영수・정수성・조윤선・ 정병국 · 김충환 · 심재철 · 강석호 · 김성태 · 이인기 · 유정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23 김선동·권영진·손범규·이한성· 최경희 · 이명수 · 김세연 · 이인기 · 손숙미 · 남경필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9 정옥임·박대해·김호연·조문환· 김태원 · 이춘식 · 정하균 · 이종혁 · 심대평 · 정영희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3 김성태·권영진·이명규·이사철· 이인기·임동규·정갑윤·주광덕·황영철· 현기환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국토해양위원장 보고

#### ○의안 철회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

(2012. 4. 16 국방위원장 제출)5월 2일 제출자 철회 요구

#### ○청원 제출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이상 2건 2012. 2. 29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외 3인으로 부터 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3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 ○추천의뢰서 제출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추천의 건

(2012. 3. 5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제출)

#### ○서면질문서 제출

농축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방문취업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서

(2012. 3. 16 김성회 의원 제출)

#### ○서면답변서 제출

**안철수씨 검찰 조사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2. 29 정부 제출)

(주)안철수연구소 BW발행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3. 9 정부 제출)

농축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방문 취업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3. 26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 ○보고서 제출

#### 2011년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2012. 3. 2 언론중재위원회 제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보고

(2012. 3. 23 정부 제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 2011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2. 3. 26 금융위원회 제출)

정무위원회에 회부

#### 2012년도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서

(2012. 3. 26 정부 제출)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 공적자금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

(2012. 3. 29 금융위원회 제출) 정무위원회에 회부

2011회계연도 대한적십자사 세입 · 세출결산서

(2012. 3. 29 대한적십자사 제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2012. 3. 30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연차보고서

(2012. 4. 2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2. 4. 2 한국은행 제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2. 4. 19 한국은행 제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제출되었음 2012. 3. 28 여성가족부

#### ○통지

#### 국회의원 확정판결 궐원

3월 15일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 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광근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에게 통지함

#### 국회의원 궐원

4월 27일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 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경식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 ○제307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	2012년 4월 24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주요법안 처리 등
요 구 자	새누리당 황우여
요 ㅜ ^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외 240인

(2012. 4. 20)